

제1448호
2016. 8. 4(목)

발행인: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
편집인: 홍보전산과장 이 진 근
전 화 : 820-1458
F A X : 820-9996

선	기관의 장
람	

동 직 구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2016-64호 : 상도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----- 1

◎ 인 사 발 령 ----- 9

공	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	

1.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고 시

◆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-64호

상도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430호(2006.12.14.)로 구역지정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7-27호(2007.5.25.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경미한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7-85호(2007.11.29.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경미한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8-38호(2008.8.21.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경미한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3-66호(2013.5.30.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경미한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-4호(2015.1.22.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경미한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-52호(2016.6.30.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경미한변경 지정된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상도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4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상도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

나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증·감	변 경	
변경	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상도동 363번지 및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	32,001.0	증) 217.5	32,218.5	

다. 정비계획 변경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증·감	변 경		
합 계		32,001.0	증) 217.5	32,218.5	100.00	
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3,338.0	증) 27.6	13,365.6	41.48	
	제2종일반주거지역	3.0	-	3.0	0.01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8,588.0	증) 189.9	18,777.9	58.29	
	준주거지역	72.0	-	72.0	0.22	

2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고
		기 정	증 · 감	변 경		
합 계		32,001.0	증) 217.5	32,218.5	100.0	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13,980.0	증) 122.8	14,102.8	43.8	
	도 로	657.0	증) 30.7	687.7	2.1	공원 368㎡는 도로와 중복결정
	공 원	12,355.0	감) 8.6	12,346.4	38.4	
	공공공지	968.0	증) 100.7	1,068.7	3.3	
획지	소 계	18,021.0	증) 94.7	18,115.7	56.2	
	택 지 1	17,688.0	증) 94.7	17,782.7	55.2	공동주택용지
	택 지 2	333.0	-	333.0	1.0	공공청사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) 도 로 : 변경없음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3	33	12	집산 도로	336 (54)	노량진동 315-7	상도동 326-36	일반 도로	-	-	-
기정	소로	3		4	국지 도로	53	노량진동 302-282	상도동 362-42	일반 도로	-	-	-
기정	소로	3		6	국지 도로	42	노량진동 314-86	노량진동 302-186	일반 도로	-	-	-
신설	소로	3		6	국지 도로	33	노량진동 363-29	노량진동 363-186	일반 도로	-	-	-

※ ()안은 지구 내 확폭 연장임

나) 공 원 : 변경

구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명칭	세분류		기 정	증 · 감	변 경		
변경	노량진 근린공원	근린공원	상도동 363번지 일대	378,158.0 (12,355.0)	- (감_8.6)	378,158.0 (12,346.4)	-	-

※ ()은 구역 내 면적이며 공원 일부(368㎡)는 중로 3-33과 중복 결정

■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노량진 근린공원	· 구역 내 면적변경 구역 내 면적 12,355.0㎡ → 12,346.4㎡	·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다) 공공공지 : 변경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증 · 감	변 경		
변경	-	공공공지	노량진동 315-72번지 일대	968.0	증)100.7	1,068.7	-	-

■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공공공지	◦ 구역 내 면적변경 구역 내 면적 968.0㎡ → 1,068.7㎡	·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4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변경

시설 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증 · 감	변 경	
공동 이용 시설	어린이놀이터	상도동 363번지	682.70	감) 7.870	674.83	
	경 로 당	상도동 363번지	84.92	감) 0.509	85.429	
	주민공동시설	상도동 363번지	955.21	감) 15.107	970.317	
	보육시설	상도동 363번지	180.54	감) 0.191	180.349	

5)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

결정구 분	구역구분		획지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합계	존치	개수	철거후신 축	철거 이주	
기정	상도제10 주택재개발정 비구역	32,001.0	택지1	17,688.0	상도동 363번지 일대	134	-	-	-	134	
			택지2	333.0	상도동 363-189번지 일대						
변경		32,218.5 (증_217.5)	택지1	17,782.7	상도동 363번지 일대	134	-	-	-	134	
			택지2	333.0	상도동 363-189번지 일대						

나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획지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최고층수 /높이(m)	비고 (연면적)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상도제10 주택	32,001.0	택지1	17,688.0	상도동 363번지 일대	공동주택	18% 이하	262% 이하	25층 이하 (72m 이하)	68,941.45
			택지2	333.0	상도동 363-189번지 일대	공공청사 (치안센터)	관계법규에 의함			
변경	재개발 정비구역	32,218.5 (증_217.5)	택지1	17,782.7	상도동 363번지 일대	공동주택	18% 이하	262% 이하	25층 이하 (72m 이하)	68,939.78 1
			택지2	333.0	상도동 363-189번지 일대	공공청사 (치안센터)	관계법규에 의함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(변경없음)			○ 건립규모(변경없음)							
			구 분	세대수			비율(%)			
				기 정	증 · 감	변 경				
			계	471	-	471	100.0			
			60㎡이하	106	-	106	22.5			
			60~85㎡이하	365	-	365	77.5			
			85㎡초과	-	-	-	-			
			○ 임대주택 건설계획 : 총 건설 세대수의 17.8%(변경없음)							
			구 분	세대수			비율(%)			
				기 정	증 · 감	변 경				
			계	84	-	84	100.0			
			40㎡이하	84	-	84	100.0			
			40~50㎡이하	-	-	-	-			
			50~60㎡이하	-	-	-	-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			○ 3m 건축선 : 동측(장승배기길 변)							

■ 개발가능용적률 산정

구 분		산 정 내 용				
토지이용 계획	기정	계 (구역면적)	획지 (공동주택용지)	계획정비 기반시설	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·공유지	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
		32,001㎡	18,021㎡	13,980㎡	2,070.64㎡	-
	변경	계 (구역면적)	획지 (공동주택용지)	계획정비 기반시설	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·공유지	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
		32,218.5㎡	18,115.7㎡	14,102.8㎡	2,070.64㎡	-
공공시설부 지 제공면적 (순부담)	기정	·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·공유지 -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$= 13,980\text{㎡} - 2,070.64\text{㎡} = 11,909.36\text{㎡}$ · 순부담 : 대상면적(32,001㎡) 대비 37.2%				
	변경	·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·공유지 -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$= 14,102.8\text{㎡} - 2,070.64\text{㎡} = 12,032.16\text{㎡}$ · 순부담 : 대상면적(32,218.5㎡) 대비 37.3%				
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	기정	·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$\times (1 + 1.3\alpha)$ $= 230\% \times (1 + 1.3 \times 0.6608)$ $= 427.58\%$ 이하				
		$\alpha = \text{공공시설제공면적} /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}$ $= 11,909.36\text{㎡} / 18,021.0\text{㎡} = 0.6608$				
	변경	· 정비계획용적률 = 262% 이하 < 427.58%				
		·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$\times (1 + 1.3\alpha)$ $= 230\% \times (1 + 1.3 \times 0.6641)$ $= 428.56\%$ 이하				
		$\alpha = \text{공공시설제공면적} /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}$ $= 12,032.16\text{㎡} / 18,115.7\text{㎡} = 0.6641$				
		· 정비계획용적률 = 262% 이하 < 428.56%				

다) 임대주택(소형주택)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■ 임대주택 건설계획

구분	건립위치	부지면적(㎡)	동수	세대수	세대규모 (전용/분양)	비고 (연면적)
변경 없음	상도동 363번지 일대	분양대지에 포함	1동	84	38.160/54.404	4,569.936

■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계획

○ 정비계획용적률= 262% (기정비계획용적률250% + 12%)

- 계획(기준)용적률 20%상향으로 증가된 용적률(지상층연면적) 12%은 주택규모60㎡이하로 건설
- 증가연면적= 12% × 17,782.7㎡ = 2,133.924㎡

구분		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수	연면적	비고
변경 없음	60㎡ 이하 소형주택	38.160㎡	54.404㎡	9	489.636㎡	-
		59.978㎡	81.634㎡	22	1,795.948㎡	
	합 계			31	2,285.584㎡	

6)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없음

시행방법	사업시행 예정시기	사업시행 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주택재개발사업	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	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현 황 : 216세대 계 획 : 471세대 증) 255세대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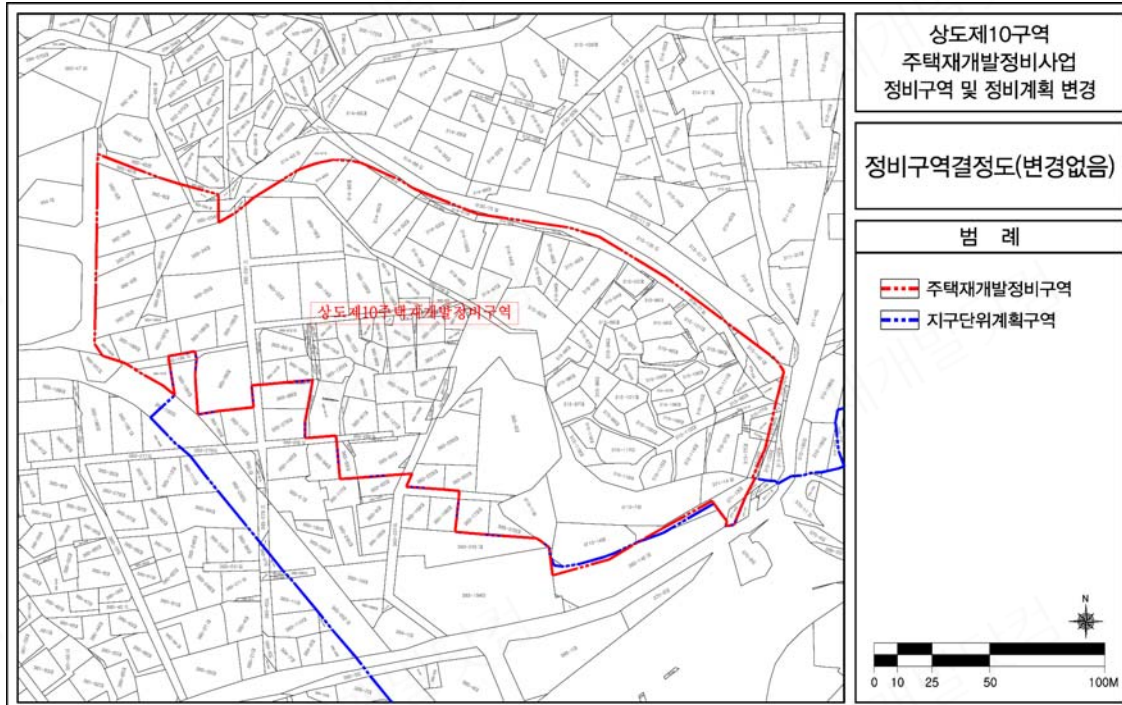
2. 관련도면 : 붙임 첨부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전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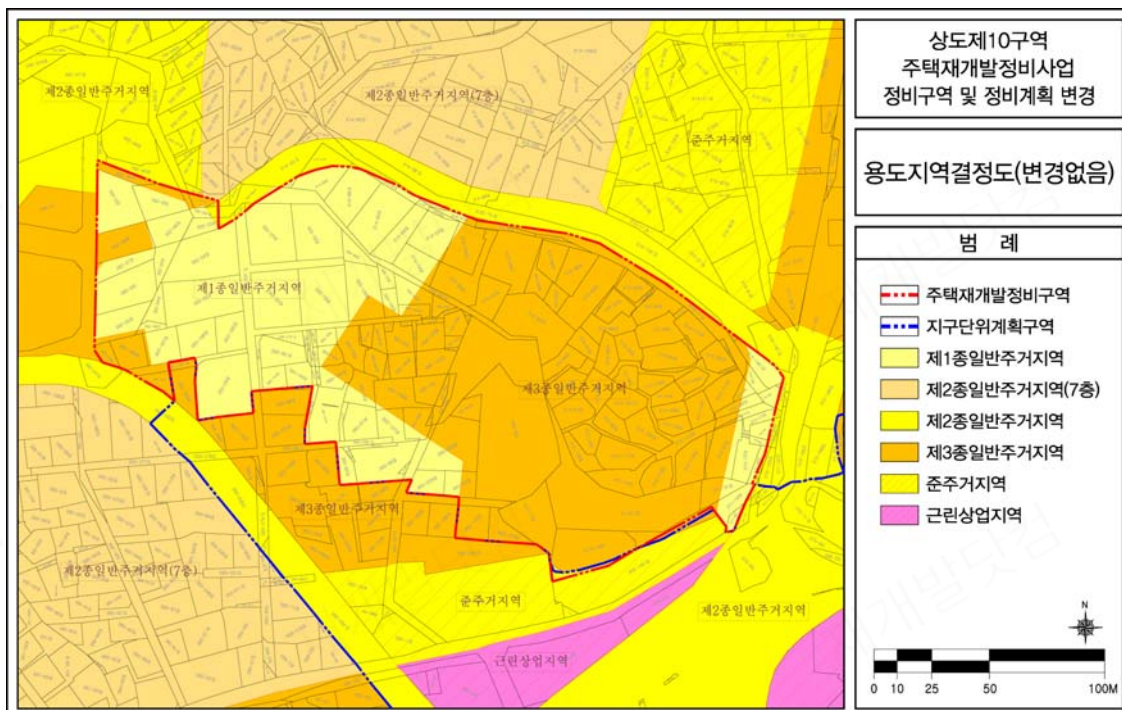
3. 관계서류

※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개발과(☎820-9809)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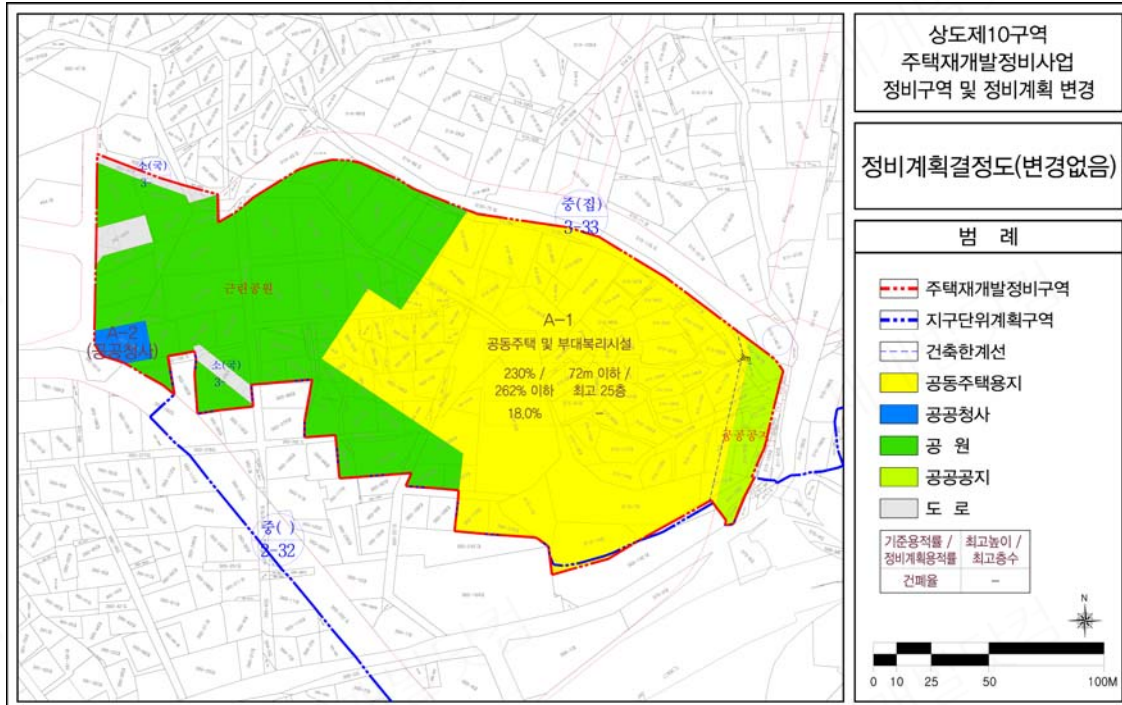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구역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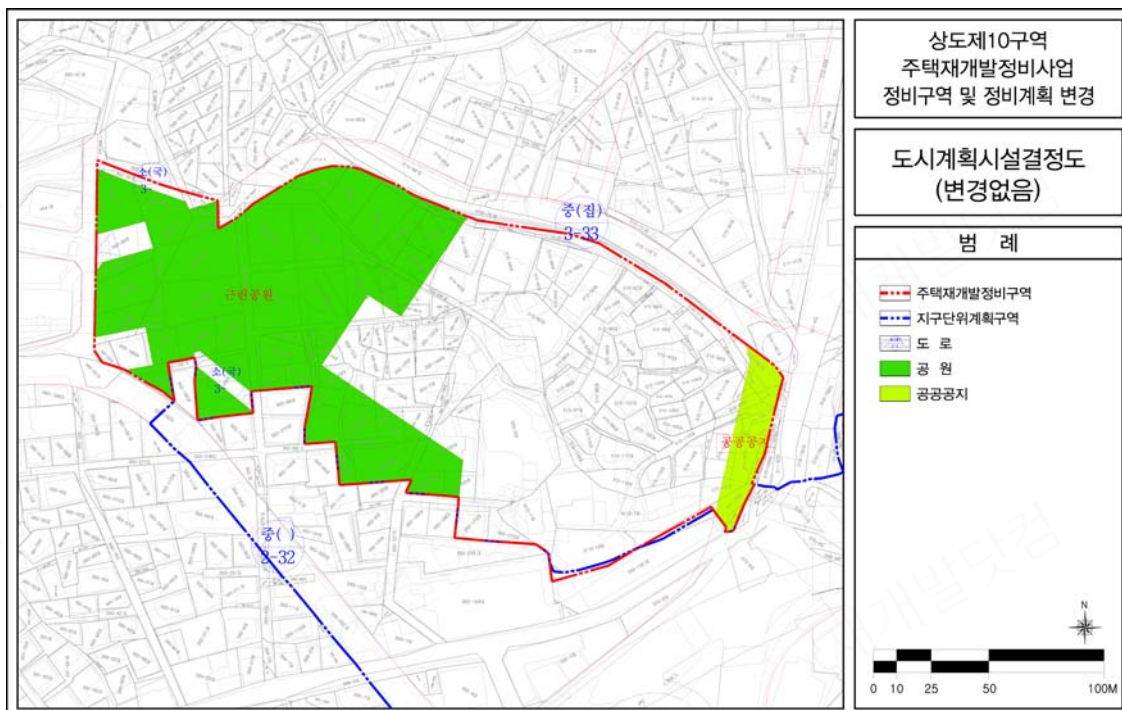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정비계획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도시계획시설결정도(변경없음)



인사발령

[발령 제153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박유미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7월3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)	상도제3동	지방행정주사보

2016. 7. 31자.

[발령 제152호]

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부서	직급
강순금	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	사당제3동	지방행정서기

2016. 8. 1자.

[발령 제154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김태훈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8월1일부터 2017년7월31일까지)	사회적마울과	지방행정주사보
2	권동경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8월1일부터 2017년7월31일까지)	청소행정과	지방행정주사보
3	이혜미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8월1일부터 2016년8월31일까지)	도시재생과	지방행정주사보
4	김은영	복직을 명함	사당제2동	지방행정서기

2016. 8. 1자.

[발령 제155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백혜영	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근무를 명함	건축과	지방건축서기
2	정준영	지방약무주사보시보에 임함 보건소 근무를 명함	신규	임용
3	김진태	지방공업서기보(전기)에 임함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와 근무를 명함	난지물재생센터	신규 임용
4	정지원	지방시설서기보시보(토목)(시간선택제)에 임함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와 근무를 명함 (근무시간 : 09:00~14:00, 4시간)	신규	임용
5	김인혜	지방시설서기보시보(건축)에 임함 도시관리국 건축과 근무를 명함	신규	임용

2016. 8. 1자.

[발령 제156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이몽주	근무기간을 연장함 (임용기간:2016.8.1~2017.7.31) ※ 주당 35시간 근무	교통지도과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

2016. 8. 1자.

[발령 제157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손성호	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(기록물관리)에 임함 행정국 민원여권과 근무를 명함 (임용기간 : 2016.8.3 ~ 2018.8.2)	신규	임용

2016. 8. 3자.

[발령 제158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이세전	동작구 전입을 명함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근무를 명함	강남구	지방행정서기
2	조성민	강남구 전출을 명함	청소행정과	지방행정서기

2016. 8. 4자.

[발령 제159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우지윤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8월7일부터 2017년8월6일까지)	어르신청소년과	지방사회복지서기

2016. 8. 7자.

동
작
구
보

제
1
4
4
8
호

동
작
구



www.dongjak.go.kr

 **동 직 구**